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허8853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이완휘

피 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수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광재, 조희래

변 론 종 결 2012. 1. 17.

판 결 선 고 2012. 2.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11. 8. 24. 2011당7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 씨레 장착용 구조물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0. 24./ 2003. 9. 4./ 제39870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로터베이터(2) 상단의 횡축(3)에 상하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된 씨레용 프레임(60)과, 이 씨레용 프레임(60)에 장착된 씨레관(50)과, 상기 씨레용 프레임(60) 또는 씨레관(50)에 연결되어 이 씨레관(50)을 회동 승강되도록 하는 실린더(27)를 포함하여 구성된 트랙터용 씨레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실린더(27)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 결합되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일측으로 개방된 결합홈(12)이 형성되어 이 결합홈(12)에 의해 상기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결합되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이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결합홈(12) 개방부(15)에 설치되어 상기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이 결합홈(12)의 개방부(15)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볼트(16)(이하 '구성 4'라 한다)와, 상기 로터베이터(2)의 횡축(3)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며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이 연결되고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씨레 장착용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판단대상이 아니므로 기재 생략)

5) 도면 :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원고의 실시발명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내용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1. 3. 3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1당717호)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8. 24.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용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되어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대비를 통한 권리범위의 속부이다.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심결 후인 2011. 10. 13.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제20-0456245호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았으니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심결의 적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는 이후 비로소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후142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문언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성 1, 2, 3, 5 부분

가) 전제부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로터베이터(2) 상단의 횡축(3)에 상하로 회동가능하게 힌지 결합된 써레용 프레임(60)과, 이 써레용 프레임(60)에 장착된 써레판(50)과, 써레용 프레임(60) 또는 써레판(50)에 연결되어 이 써레판(50)을 회동 승강되도록 하는 실린더(27)를 포함하여 구성된 트랙터용 써레'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로터베이터(A) 상단의 횡축(A1)에 상하로 회동 가능하게 힌지 결합된 2개의 써레용 프레임(11, 12)과, 이 써레용 프레임(11, 12)에 장착된 써레판(20)과, 써레판(20)에 연결되어 이 써레판(20)을 회동 승강되도록 하는 유압실린더(30)를 포함하여 구성된 트랙터용 써레'와 대응되고, 양 구성은 모두 로터베이터 상단의 횡축에 상하로 회동가능하게 힌지 결합된 써레용 프레임, 써레용 프레임에 장착된 써레판, 써레판에 연결되어 써레판을 회동 승강되도록 하는 실린더(유압실린더)를 포함하는 트랙터용 써레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은 확인대상발명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0)과 대응되고, 양 구성은 모두 실린더(유압실린더)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 결합되는 부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은 확인대상발명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과 대응되고, 양 구성은 모두 일 측으로 개방된 결합홈이 형성되어 이 결합홈에 의해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결합되는 한 쌍의 부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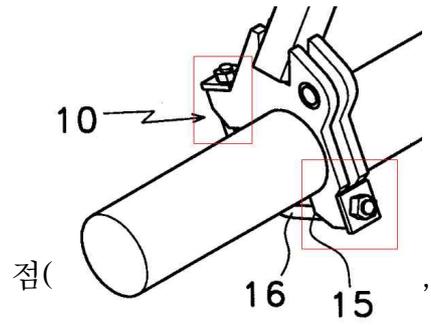
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의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은 확인대상발명의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0)과 대응되고, 양 구성은 모두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며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고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부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3, 5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 4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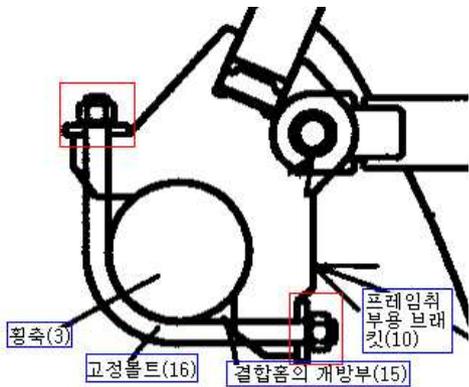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결합홈(12) 개방부(15)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이 결합홈(12)의 개방부(15)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볼트(16)'이다.

그런데 위 '고정볼트(16)'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결합홈(12)의 개방부(15)에는 대략 \perp 자형태로 절곡되어 로터베이터(2)의 축(3)을 둘러싸도록 된 고정볼트(16)가 결합되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이 결합홈(12)의 개방부(15)를 통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이상의 구성에 의한 써레장착용 구조물은 중앙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 양단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이 조립식으로 된 하나의 구조물에 의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볼트 체결되므로, 사용자가 종래와 같이 별도의 용접 공정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써레를 장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갑 제3호증 중 3쪽 '발명의 구성 및 작용'란)고 기재되어 있

고, 또 도 2, 4에는 고정볼트(16)의 단부에 너트가 결합되어 고정볼트(16)가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결합홈(12)의 개방부를 통해 횡축(3)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상태가 도시되어 있는 점(



), 일반적으로 '고정볼트'란 축 지름이 비교적 큰 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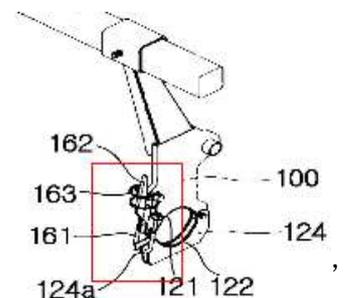
못으로서 주로 체결용으로 사용되고, 너트 등의 보조 부재와 함께 결합되어 고정 대상에 체결되는 것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상식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의 기술적 의미는 '보조 부재인 너트와 함께 결합되어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12)의 개방부(15)에 설치(체결)됨으로써,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이 결합홈(12)의 개방부(15)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볼트'로 봄이 상당하다[피고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고정볼트(16)가 횡축(3)의 직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너트를 조이거나 풀어 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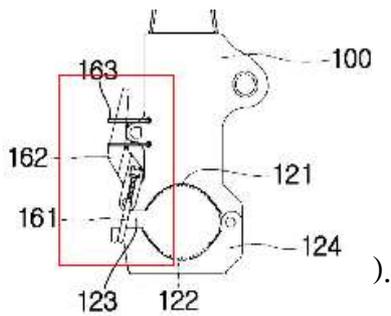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은 '프레임취

부용 브래킷(100)의 결합홈(120) 개방부(123)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B)의 횡축(A1)이 결합홈(120)의 개방부(123)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수단(160)'이다.

그런데 위 '고정수단(160)'에 관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결합홈(120)은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의 하부에 형성된 제1 결합홈(121)과 제1 결합홈(121)에 연장되어 횡축을 감싸는 제2 결합홈(122)로 구성되어 있고, 제1 결합홈(121)과 제2 결합홈이 횡축(A1)을 감쌀 때 일정 길이만큼 개방된 개방부(123)가 형성되어 있으며, 제2 결합홈이 형성된 연장 체결부(124)의 단부에는 고정볼트(161)가 걸려 고정되는 걸림턱(124a)이 형성되어 있다. 고정수단(160)은 고정볼트(161)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고정볼트(161)가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되어 로터베이터(B)의 횡축(A1)이 결합홈(120)의 개방부(123)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고정볼트(161)가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되게 하는 방법은 고정볼트(161)가 걸림턱(124a)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161)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162)를 젖혀 고정볼트(161)을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161)가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 도 2, 4에는, 위 고정수단(160)이 하단부가 고리 형태로 된 고정볼트(161)와 레버(162) 및 걸림턱(124a)으로 이루어져, 고정볼트(161)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124a)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161)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162)를 젖혀 고정볼트(161)가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의 결합홈(120)의 개방부(123)에 체결됨으로써, 로터베이터의 횡축(A1)이 분리되

지 않도록 고정하고 있는 상태가 도시되어 있다(





다) 이들 구성을 대비하면, 모두 '보조 부재와 함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체결)됨으로써,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고정볼트'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고정볼트의 체결을 위한 보조 부재로 '너트'를 사용하고 있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걸림턱과 레버'를 구비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너트를 조여 고정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너트를 풀어 체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에서는 '고정볼트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를 젖혀 (고정볼트를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위 레버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 (고정볼트를 하부로 내려가게 하여) 고정볼트의 체결력을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게 된다.

3) 대비 결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2, 3, 5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문언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먼저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일반적으로 트랙터용 씨레는 트랙터 후방의 로터베이터에 연결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에 의해 파쇄된 무논의 흙을 평탄화하게 된다. 이러한 트랙터용 씨레의 장착구조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로터베이터(2) 상단의 횡축(3) 중앙부에 소정길이 상향 연장된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이 구비되어 이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에 씨레를 승강시키기 위한 실린더(27)를 핀결합함과 더불어, 이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 양측의 로터베이터(2) 횡축(3)상에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이 구비되어 이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에 씨레용 프레임(60)의 선단이 상하로 회동가능하게 핀결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착구조를 갖는 트랙터용 씨레는 이를 농가에서 구입하여 농민이 직접 로터베이터(2) 상단의 횡축(3)에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과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을 각각의 용접부(73, 83)에 의해 장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접기 등의 작업도구가 필요함은 물론 그 작업이 번거로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과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을 사용자가 각각 별도로 용접하여 장착하게 되면, 사용가마다 그 장착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되므로, 씨레의 작동이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즉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을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에 대해 정해진 높이보다 지나치게 낮게 장착할 경우 씨레판(50)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게 되며, 반대로 지나치게 높게 장착하게 되면, 작업 시 씨레판(50)이 무논의 흙을 가압하지 못해 무논을 제대로 평탄화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도 트랙터용 씨레의 장착구조는 로터베이터(2)의 횡축(3)

에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과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을 각각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하므로, 용접 시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이 손상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꺼려하는 문제점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갑 제3호증 중 2쪽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란), '본 발명에 따른 씨레 장착용 구조물은 중앙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 양단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이 조립식으로 된 하나의 구조물에 의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간편하게 장착될 수 있다. ...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하단부에는 하부로 개방된 반원형의 결합홈(12)이 형성되어 이 결합홈(12)에 의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걸쳐지게 되고, 이 결합홈(12)의 개방부(15)에는 대략 L자형태로 절곡되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을 둘러싸도록 된 고정볼트(16)가 결합되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이 결합홈(12)의 개방부(15)를 통해 분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 이상의 구성에 의한 씨레장착용 구조물은 중앙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 양단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이 조립식으로 된 하나의 구조물에 의해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볼트 체결되므로, 사용자가 종래와 같이 별도의 용접 공정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간편하게 씨레를 장착할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다. 또한 위 씨레장착용 구조물은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의 위치가 규격화된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에 의해 항상 정해진 위치에 셋팅되므로, 종래와 같이 실린더(27)의 장착위치가 적절하지 못해 발생하는 씨레 작동상의 불량요인이 해소된다.'(갑 제3호증 중 3쪽 '발명의 구성 및 작용'란)고 기재되어 있어, '씨레가 제대로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면 실린더취부용 브래킷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상대적 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종래의 트랙터용 씨레는 이를 농가에서 구입하여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매개 없이 직접 로터베이터(2)상단의 횡축(3)에 프레임취부용 브래킷(80)과 실린더취부용 브래킷(70)을 각각의 용접

부(73, 83)에 의해 용접·장착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린더취부용 브래킷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상대적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여 씨레가 평탄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불편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씨레 장착을 위한 규격화된 별도의 구조물인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이 그 양단부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에 의해 횡축에 고정됨과 동시에 그 중앙부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에 의해 실린더(27)를 고정하는 부재로 작용함으로써 위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다.

또한 갑 제6, 7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 출원 전의 종래의 트랙터용 씨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과 같은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매개 없이 로터베이터 상단의 횡축에 씨레 장착대[또는 씨레용 프레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씨레용 프레임(60)에 해당]가 직접 고정·설치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일반적으로 판매·사용되고 있는 로터베이터들은 그 제조사가 여러 업체일 뿐만 아니라 제조사별로 트랙터용 씨레가 장착되어야 할 로터베이터의 구조 또한 상이하여, 규격화된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매개 없이 로터베이터 상단의 횡축에 씨레 장착대(씨레용 프레임)를 직접 고정·설치할 때에는 실린더가 로터베이터의 다양한 상부 구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장착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기술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구성 2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 구성 3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을 규격화된 하나의 구조물 즉, 구성 5의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며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에 연결하여 이를 로터베이터(2)의 횡축(3)에 설치하되, ② 위 설치는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의 결합홈(12)을 횡축(3)에 결합하고, 위 결합홈의 개방부를 구성 4의 고정볼트(16)로 체결하는 수단(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를 사용)'에 의함으로써, 트랙터용 씨레를 로터베이터에 매개체가 되는 규격화된 장착용 구조물을 통하여 간편하게 장착함과 아울러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에 배치되도록 하는 점에서 선행 기술과 주된 차이가 있고, 이러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 역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하나의 구조물 즉, 로터베이터의 횡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며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에 의해 연결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설치되는 구성' 및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개방부를 고정볼트에 의해 체결(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를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구성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별개의 것으로 평가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니,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질적이고 특징적인 구성은 그대로 채택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볼트의 체결을 위한 보조부재인 '너트' 대신 '걸림턱과 레버'를 구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조여 고정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너트를 풀어 체결 상태를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구성'을 '고정볼트의 하단부의 고리 부분이 걸림턱에 걸리도록 한 뒤 고정볼트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를 젖혀 (고정볼트를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고정볼트가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체결됨으로써 써레판을 장착하고, 위 레버를 반대방향으로 밀어 (고정볼트를 하부로 내려가게 하여) 고정볼트의 체결력을 해제함으로써 써레판을 탈착하는 구성'으로 치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매개체가 되는 규격화된 장착용 구조물을 통하여 간편하게 장착함과 아울러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에 배치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치환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너트로 고정볼트를 고정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방식이나, 걸림턱과 레버를 이용하여 고정볼트를 고정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체결방식은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분야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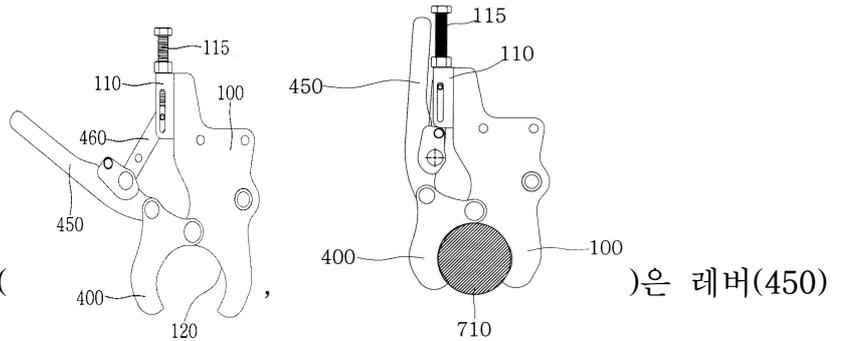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기술이니, 확인대상발명의 위 치환은 통상의 기술자라며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너트를 확인대상발명의 걸림턱 및 레버로 치환하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 목적이 같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위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으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하는 방식인 반면에, 확인대상발명은 레버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별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레버고정 방식을 채택한 당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이하 '별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3 별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과 같다)이 볼트고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후1565 판결), 이 사건에서도 레버고정 방식에 따르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볼트고정 방식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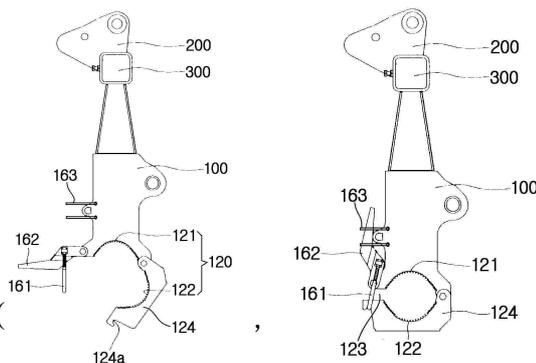
살피건대, 별건 확인대상발명(



)은 레버(450)

의 작용에 의해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의 말단부 및 취부브래킷(400)이 양쪽에서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을 감싸 가압함으로써 그 가압력에 의해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이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과 결합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볼트 부재인 각도조절볼트(115)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의 개방부에 설치되는 고정볼트'와는 달리, 그 자체가 로터베이터의 횡축을 고정시키는 부재가 아니라 안내관(110)에 끼워져 이동핀(460)의 이동거리와 이에 따른 취부브래킷(400)의 회동각도를 변경시킴으로써 결합홈(12)의 직경을 조절하는 부재로서 기능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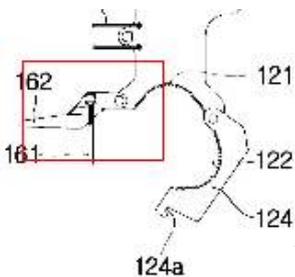
)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개방부를 고정볼트에 의해 체결(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결합홈 개방부에 설치되어 로터베이터의 횡축이 결합홈의 개방부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하는 수단으로 고정볼트와, 고정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보조 부재

를 사용)'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고, 고정볼트(161)는 그 자체가 로터베이터의 횡축을 고정시키는 부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레버(162)는 이러한 고정볼트(161)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의 개방부에 체결시키기 위한 보조 부재로서 기능하고 있어, 양 확인대상 발명은 볼트의 고정력을 이용한 고정수단을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성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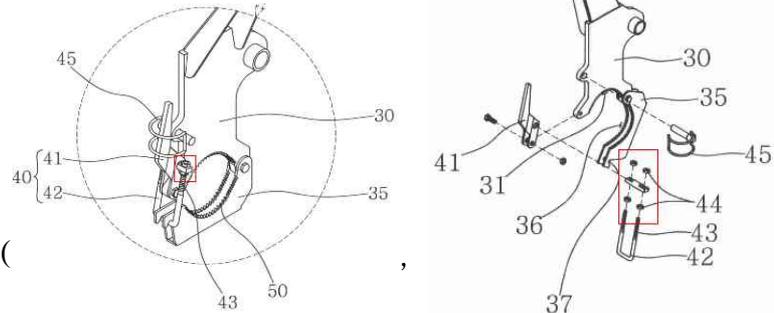
2)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썬레 장착 시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을 횡축에 대고 고정볼트를 끼우고 나서 너트를 조여야 하므로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복잡하며 고정볼트(16)나 너트를 분실할 위험성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 발명은 썬레의 장착 및 분리 작업 시 레버(162)의 원터치 작용으로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탈부착 시 부품의 분실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효과상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고정볼트의 상단부를 레버와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너트 등의 별도의 보조 부재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확인대상 발명의 도면(특히 도 3



에는 고정볼트(161)의 상단부가 레버(162)의 일측에 너트로 고정되어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심결 후 확인대상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 받았다고 주장하는 제20-0456245호의 명세서에도 '고리(42, 확인대상 발명의 고정볼트에 해당)의 단부에 나선형상으로 볼트부(43)가 형성되고, 볼트부(43)에 끼움결

합되게 너트(44)가 구비되도록 한다. 이때 너트(44)는 볼트부(43)로부터의 풀림이 방지되도록 복수개 구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갑 제9호증의 2 중 식별번호 [0018])고 기



재되어 있고, 도 1, 2(

)에는 복수개

의 너트가 도시되어 있다(별지 4 후 등록고안의 도면 참조)], 확인대상발명도 써레 장착 시 고정볼트의 길이를 횡축의 직경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레버와 결합되는 고정볼트의 상단부를 너트로 조여주는 작업을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하여 고정볼트의 장착 및 분리 시 부품(고정볼트, 너트 등)의 분실 위험도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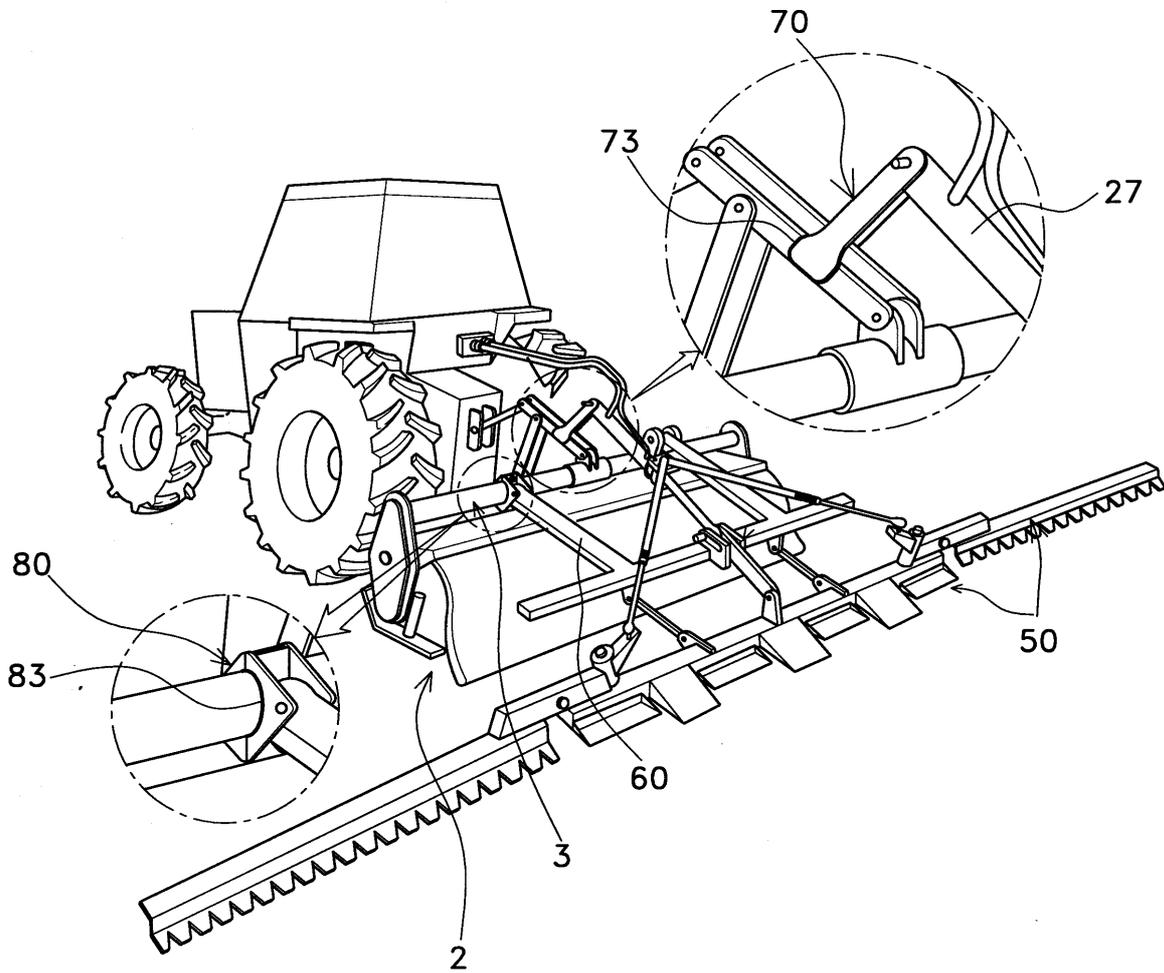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택수
	판사	박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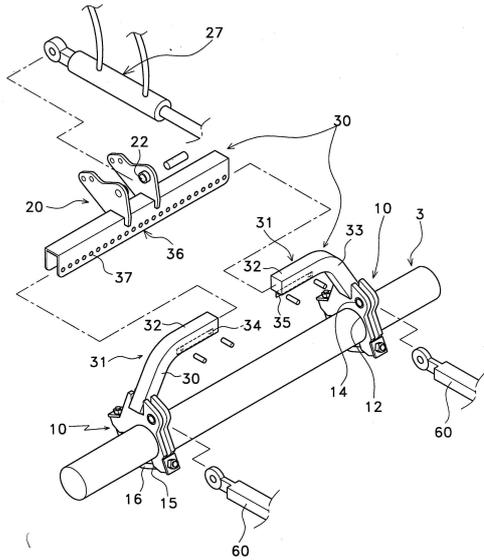
판사 염호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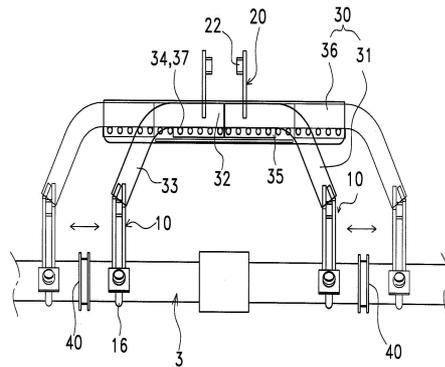
[도 1] 종래의 트랙터용 써레의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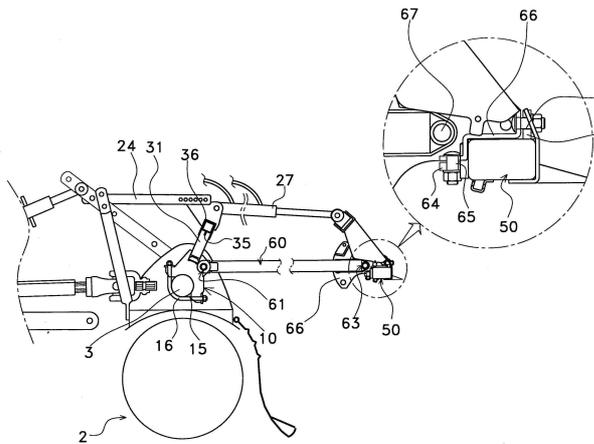
[도 2]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분해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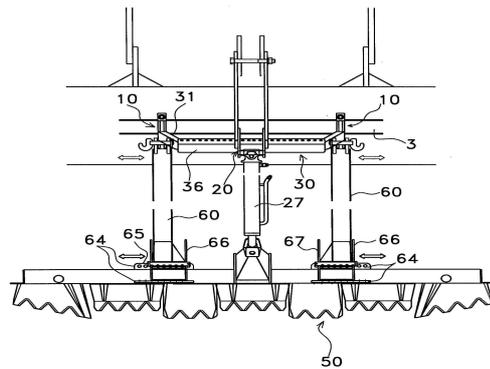
[도 3]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배면도



[도 4] 씨레 장착용 구조물에 씨레가 장착된 모습을 보인 측면도



[도 5] 씨레 장착용 구조물에 씨레가 장착된 모습을 보인 평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로터베이터, 3: 횡축, 10: 프레임취부용 브래킷, 12: 결합홈, 20: 실린더취부용 브래킷, 27: 실린더, 30: 브래킷연결용 프레임, 40: 부착물, 50: 씨레판, 60: 씨레용 프레임. 끝.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가.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써레 장착용 구조물

나.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트랙터용 써레를 로터베이터에 간편하게 장착할 수 있으면서도 장착 시 써레의 작동이 원활하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된 써레 장착용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는 다음과 같다.

1)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로터베이터(A) 상단의 횡축(A1)에 상하로 회동 가능하게 힌지 결합된 2개의 써레용 프레임(11, 12)과, 이 써레용 프레임(11, 12)에 장착된 써레판(20)과, 상기 써레판(20)에 연결되어 이 써레판(20)을 회동 승강되도록 하는 유압실린더(30)를 포함하여 구성된 트랙터용 써레에 있어서, 상기 유압실린더(30)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 결합되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0)과,

일측으로 개방된 결합홈(120)이 형성되어 이 결합홈(120)에 의해 상기 로터베이터(B)의 횡축(A1)에 결합되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과, 상기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의 결합홈(120) 개방부(123)에 설치되어 상기 로터베이터(B)의 횡축(A1)이 상기 결합홈(120)의 개방부(123)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고정수단(160)와, 상기 로터베이터(A)의 횡축(A1)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며 양 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이 연결되고 중앙부에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0)이 연결되는 브래킷연결용 프레임(300)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

상기 결합홈(120)은 상기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의 하부에 형성된 제1 결합홈(121)과 상기 제1 결합홈(121)에 연장되어 횡축을 감싸는 제2 결합홈(122)로 구성되어 있고, 상기 제1 결합홈(121)과 제2 결합홈이 상기 횡축(A1)을 감쌀 때 일정 길이만큼 개방된 개방부(123)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 제2 결합홈가 형성된 연장 체결부(124)의 단부에는 고정볼트(161)가 걸려 고정되는 걸림턱(124a)이 형성되어 있다.

상기 고정수단(160)은 상기 고정볼트(161)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상기 고정볼트(161)가 상기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되어 상기 로터베이터(B)의 횡축(A1)이 상기 결합홈(120)의 개방부(123)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상기 고정볼트(161)가 상기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되게 하는 방법은 상기 고정볼트(161)가 상기 걸림턱(124a)에 걸리도록 한 뒤 상기 고정볼트(161)의 상단부와 결합된 레버(162)를 젖혀 상기 고정볼트(161)을 상부로 올려지게 하여 상기 고정볼트(161)가 상기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되게 한다.

또한, 상기 고정수단(160)은 상기 고정볼트(161)에 의하여 상기 로터베이터(B, 'A'의 오기로 보인다)의 횡축(A1)이 상기 결합홈(120)의 개방부(123)를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고정볼트(161)가 상기 걸림턱(124a)에 걸려 고정된 후 상기 레버(162)가 풀리지 않도록 하는 보조 고정수단인 레버 고정수단(163)을 더 구비할 수 있다.

상기 레버 고정수단(163)은 상기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0)의 일측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어 고정되는 "ㄷ" 자 형상의 강철선으로서, 상기 고정볼트(161)가 상기 걸림턱

(124a)에 걸려 고정된 뒤, 상기 "ㄷ" 자 형상의 내부에 상기 레버(162)가 삽입되게 하여 상기 레버(162)가 풀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상기 레버 고정수단(163)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하여 상기 레버(162)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2)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

확인대상발명은 실린더취부용 브래킷과 프레임취부용 브래킷이 하나의 구조물에 의해 로터베이터의 횡축에 간편하게 장착되고, 실린더가 제조회사에서 설계된 대로 정위치되어 셋팅되므로 씨레의 작동이 원활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3)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씨레 장착용 구조물이 트랙터에 장착된 외관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사시도(씨레용 프레임 제외)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씨레 장착용 구조물에서 횡축에 장착되기 전의 측면도(횡축 미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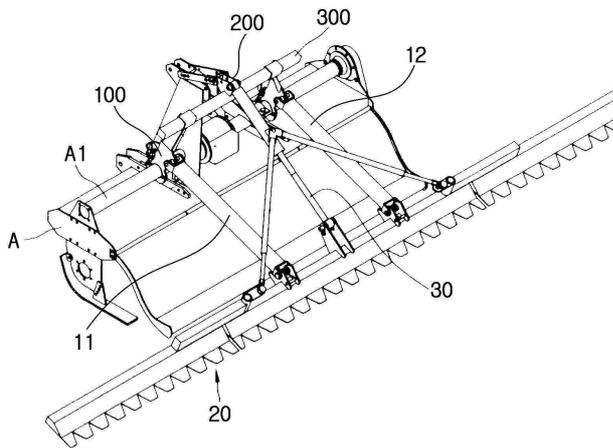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씨레 장착용 구조물에서 횡축에 장착된 상태의 측면도(횡축 미도시)

[도면의 부호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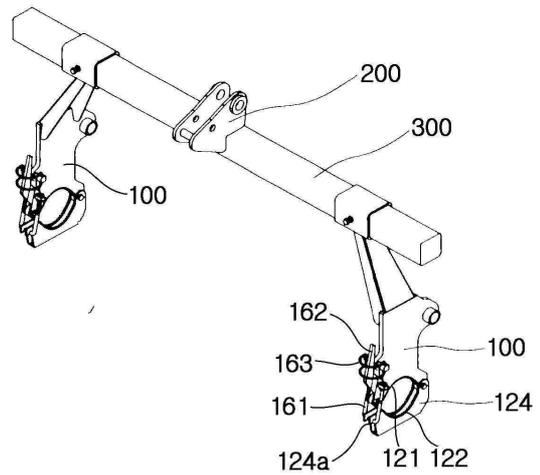
A: 로터베이터, A1: 횡축, 11,12: 씨레용 프레임, 20: 씨레, 30: 유압실린더, 100: 프레임취부용 브래킷, 120: 결합홈, 121: 제1 결합홈, 122: 제2 결합홈, 123: 개방부, 124: 연장 체결부, 124a: 걸림턱, 160: 고정수단, 161: 고정볼트, 162: 레버, 163: 레버 고정수단, 200: 실린더취부용 브래킷, 300: 브래킷연결용 프레임

2.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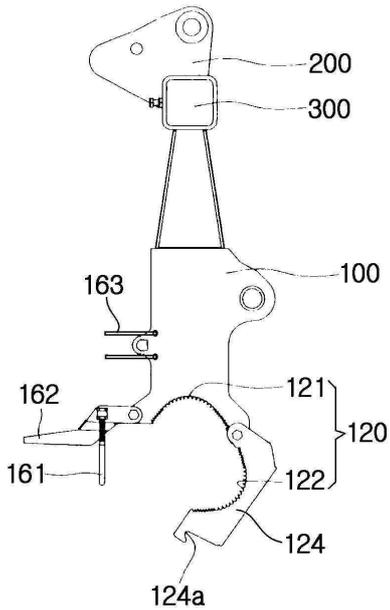
[도 1] 썰레 장착용 구조물이 트랙터에 장착된 외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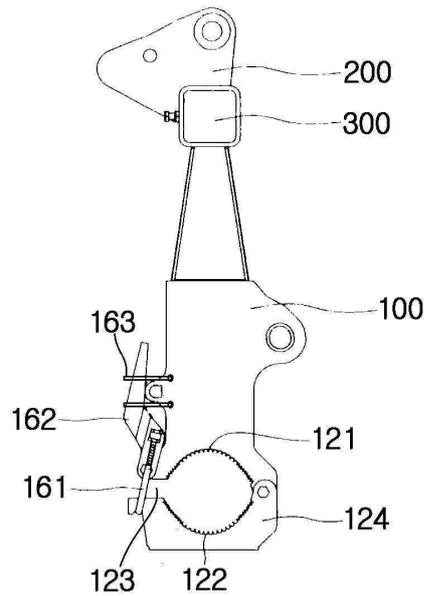
[도 2] 썰레 장착용 구조물의 사시도(썰레용 프레임 제외)



[도 3] 썰레 장착용 구조물에서 횡축에 장착되기 전의 측면도(횡축 미도시)



[도 4] 썰레 장착용 구조물에서 횡축에 장착된 상태의 측면도(횡축 미도시)



끝.

별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명칭

써레 장착용 구조물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써레 장착용 구조물이 로터베이터에 장착된 상태도,

도 2는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에 결합된 취부 브래킷 및 레버 부재를 보인 상태도,

도 3은 레버와 취부 브래킷의 연결상태도,

도 4는 레버의 동작에 따른 취부 브래킷의 회동상태도,

도 5는 횡축에 결합된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을 보인 상태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0: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 110: 안내관, 115: 각도조절볼트, 120: 결합 홈, 200: 실린더 취부용 브래킷, 270: 실린더, 300: 브래킷 연결용 프레임, 400: 취부 브래킷, 450: 레버, 460: 이동편, 500: 써레판, 600: 써레용 프레임, 700: 로터베이터, 710: 횡축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별건 확인대상발명은 써레 장착용 구조물에 관한 것으로,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에 상하로 회동 가능하게 힌지 결합된 써레용 프레임(600)과, 써레용 프레임(600)에 장착된 써레판(500)과, 써레용 프레임(600) 또는 써레판(500)에 연결되어 이 써레판(500)을 회동 승강되도록 하는 실린더(270)와, 실린더(270)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 결합되는 실린더 취부용 브래킷(200)과, 상부 일 측에 각도조절볼트(115)가 끼워진 안내관(110)이 형성되고, 하부에 일 측으로 개방된 결합 홈(120)이 형성되어 로터베이터

(700)의 횡축(710)에 결합되는 한쌍의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100)과,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100)의 결합 홈(120)에 일 측이 힌지 결합되고 다른 측에 안내관(110)을 따라 이동되는 레버 부재가 힌지 결합되어 레버(450)의 동작에 의해 회동되면서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이 결합 홈(120)을 통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취부 브래킷(400)과,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과 나란한 방향으로 설치되며 양단부에는 한 쌍의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100)이 연결되고 중앙부에는 실린더 취부용 브래킷(200)이 연결되는 브래킷 연결용 프레임(300)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100)에는 써레판(500)에 연결되는 써레용 프레임(600)의 단부가 힌지 결합되어 있으며,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에 결합되어 분리되지 않도록 하부 일 측에 취부 브래킷(40)이 힌지 결합되어 있고, 상부 일 측에 형성된 안내관(110)을 통해 취부 브래킷(40)에 연결되어 있는 레버 부재의 이동핀(460)이 이동되도록 구성된다.

레버부재는 취부 브래킷(400)의 타측에 결합되는 레버(450)와, 레버(450)의 상부 일 측에 힌지 결합된 채 타측 단부가 안내관(110)을 따라 이동되게 구비되는 이동핀(460)으로 구성된다.

이때, 안내관(110)에는 이동핀(460)의 이동거리를 조절하여 취부 브래킷(400)의 회동각도를 조절하도록 각도조절볼트(115)가 끼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각도조절볼트(115)의 조절로 취부 브래킷(400)의 회동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제조회사마다 각기 다른 직경을 갖는 로터베이터의 횡축에도 기존의 써레판을 손쉽게 탈부착시킬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이 구성된 별건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는 레버(450)의 회동동작으로 취부 브래킷(400)을 회동시켜 로터베이터(700)의 횡축(710)에 내면을 밀착시킴으로써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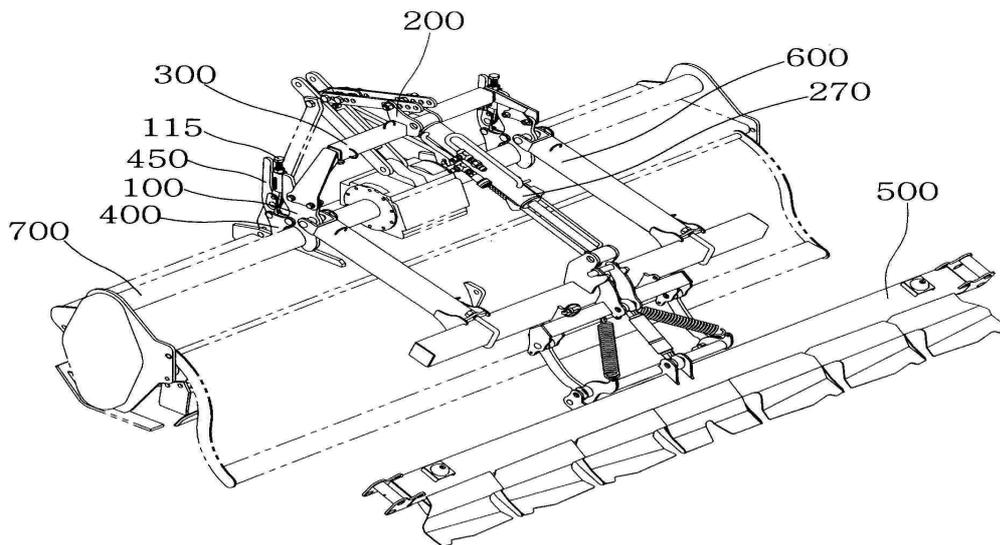
레임 취부용 브래킷(110)을 횡축(710)에 결합시키게 된다.

이때, 레버(450)의 회동동작(시계방향은 잠금, 반시계방향은 풀림)으로 취부 브래킷(400)을 횡축(710)에 밀착 또는 이탈시킴으로써 작업자는 손쉽게 써레판(500)을 장착시킬 수 있게 되고, 각도조절볼트(115)의 각도조절로 취부 브래킷(400)의 회동각도를 조절하여 횡축(710)에 결합되는 밀착력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레버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물질의 접촉시에도 작동 불능없이 정확한 동작으로 횡축(710)에 밀착 결합되어 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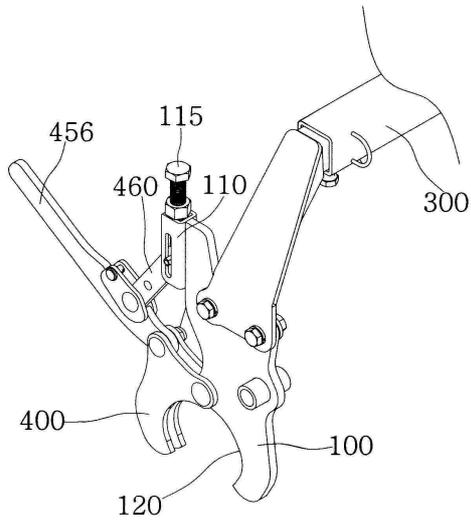
또한, 프레임 취부용 브래킷(100)이 횡축(710)에 밀착결합됨에 따라 외부의 압력에도 부품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각각의 부품이 분리되지 않고 상호 결합된 상태로 동작됨에 따라 써레판의 결합/분리작업시 부주의로 인한 부품의 분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서로 다른 직경을 갖는 횡축에도 손쉽게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4.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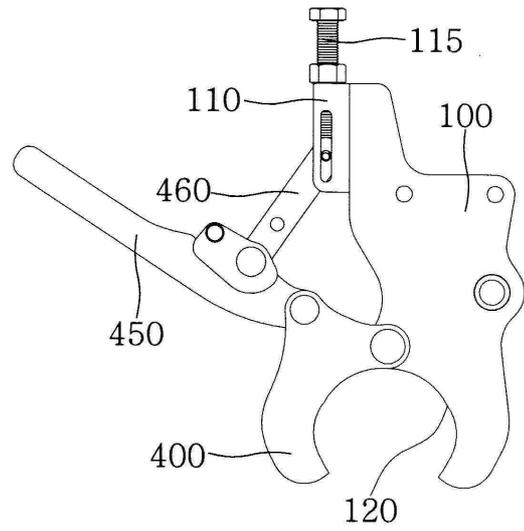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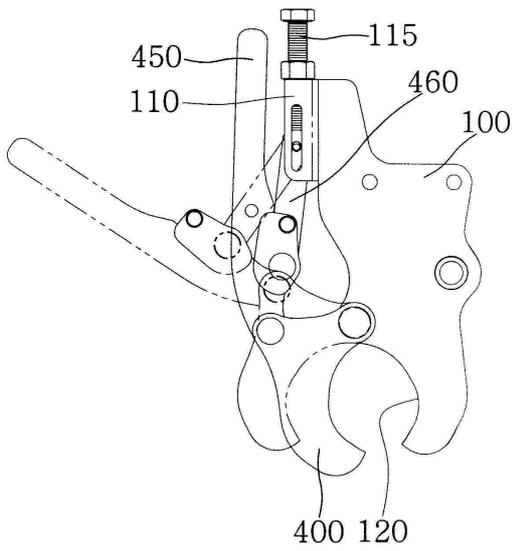
[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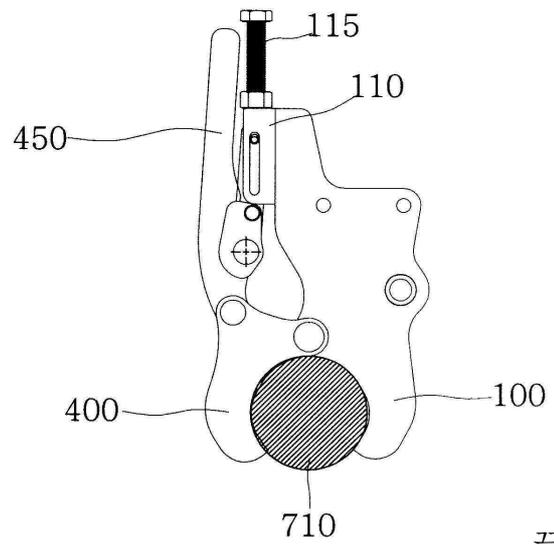
[도3]



[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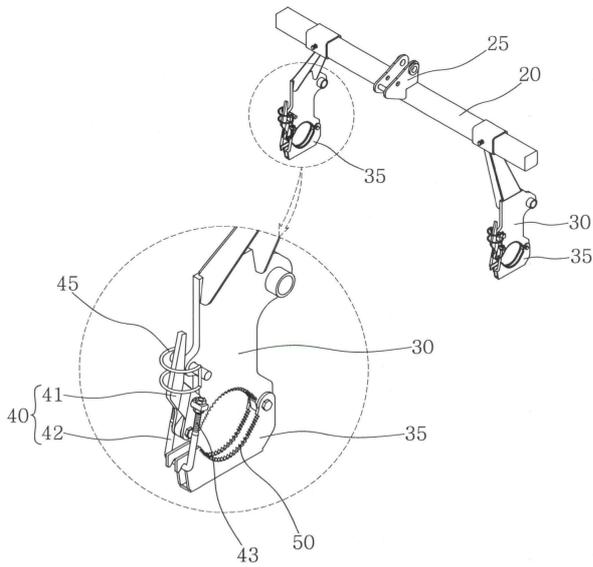
[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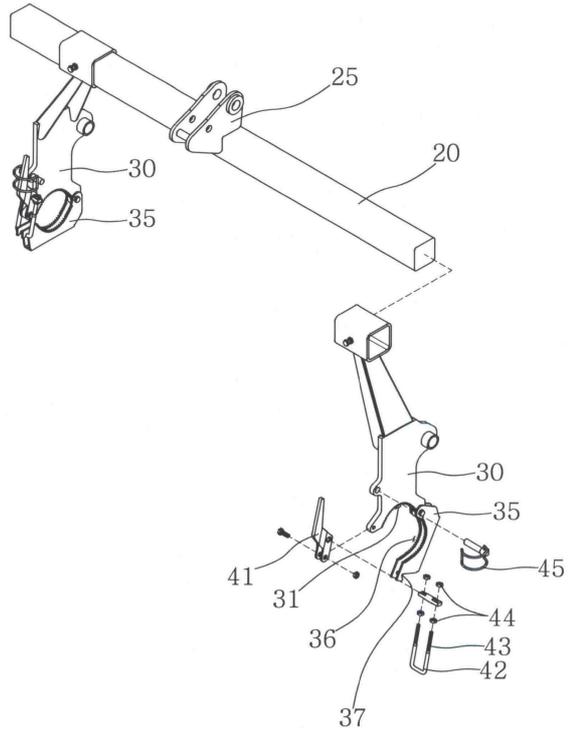
끝.

후 등록고안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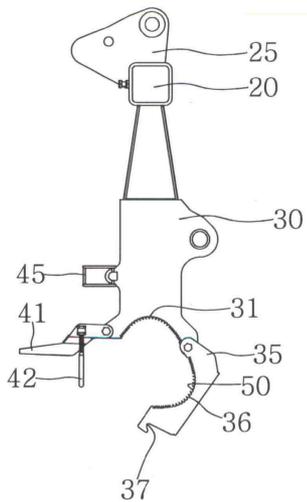
[도 1]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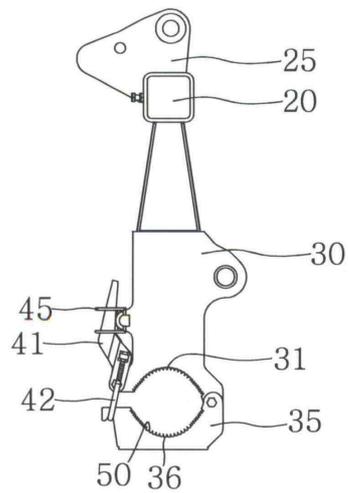
[도 2]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분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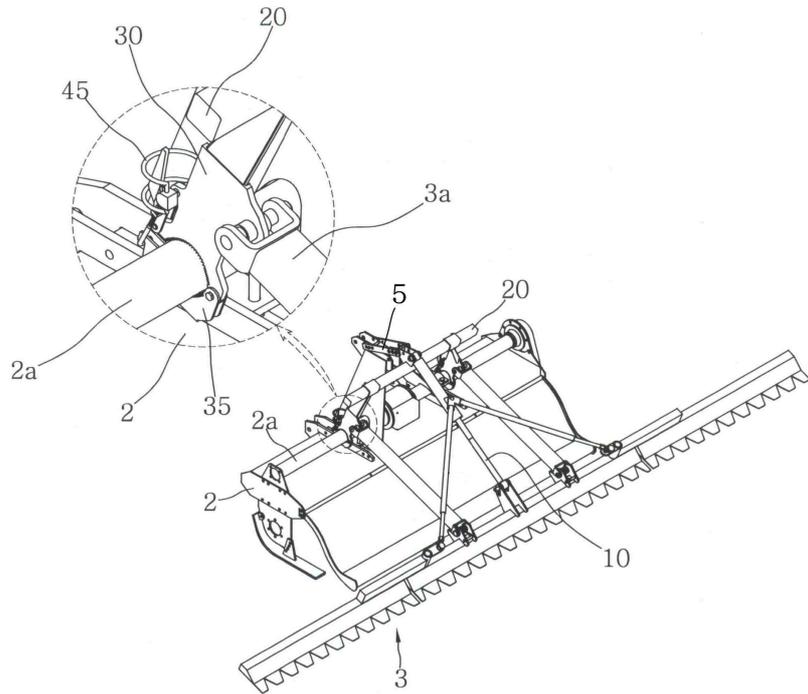
[도 3] 토글 클램프와 체결브래킷의 체결 전 상태도



[도 4] 토글 클램프와 체결브래킷의 체결 후 상태도



[도 5] 씨레 장착용 구조물의 사용 상태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 로터리, 2a: 횡축, 3: 씨레, 3a: 프레임, 5: 지지로드, 10: 신축실린더, 20: 지지 프레임, 25: 고정브래킷, 30: 이동브래킷, 31: 오목홈, 35: 체결브래킷, 36: 체결홈, 37: 걸림턱, 40: 토글 클램프, 41: 레버, 42: 고리, 43: 볼트부, 44: 너트, 45: 고정부재, 50: 요홈부. 끝.